파주시 공고 제2019 - 81호

기간제 근로자(체납 실태 조사원) 채용 공고

파주시 기간제근로자(체납 실태 조사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19년 1월 10일

파 주 시 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채용분야	업무내용	채용인원	계약기간
파주시청 (징수과)	조장, 반장, 조사원, 보조인력	체납자 실태조사 -체납자 거주지, 사업장 방문 -전화징수독려 -조사자료정리	30명	2019. 3. 4. ~ 2019. 12. 20. (단, 혹서기 2주 제외)

※ 상기 30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(축소) 가능

2. 보수 및 복무

가. 보 수 : 시급 10,000원 (주휴수당 만근시 지급, 4대보험 가입)

※ 근거 :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

나. 지급방식 : 월급 형태로 지급,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

다. 계약기간 : 2019. 3. 4. ~ 2019. 12. 20. (단, 혹서기 2주 제외)

라. 4대 보험료(국민연금, 산재·고용·건강보험료) 지급

-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(자치단체장 등)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(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)

※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

마. 복무

1) 근무시간 : 월~금(주5일) 1일 6시간 (10:00 ~ 17:00)
2) 휴게시간 : 12:00 ~ 13:00 까지
3) 근로일 : 주 5일 근무, 법정 공휴일 휴무.

3. 응시자격

가. 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같은 규정 제44조(당연퇴직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≪파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≫

1.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·정지된 사람
7.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나. 연령 :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

다. 학력 : 제한 없음

라.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2년 안에 파주시 기간제근로자로 12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이 없는 자(예외 :「고령자고용촉진법」제2조 제1호의 고령자)

마. 거주지제한 :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**파주시**에 소재한 자

바. 파주시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(기준일 : 원서접수일)

사.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아. 조사대상자 방문조사, 응답자 설득, 전화 질의조회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

자. 컴퓨터 활용능력(워드, 엑셀, 액세스 등)으로 기본적 사무처리 가능자 및 상담 경험자 우대

- 동등한 조건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

※ 취업취약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

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

4. 모집방법

가. 1차 심사 : 서류전형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19. 1. 31.(목) 개별통보

나. 2차 심사 : 면접시험

- 대 상 : 1차 서류전형 합격자
- 2019. 2. 11.(월) 전후 면접일정 개별통보
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

※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(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발생,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)

다. 최종합격자 : 2019. 2. 20.(수) 전후 파주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
(불합격자는 별도 통지 없음.)

5. 공고 및 원서접수

가. 공고기간 : **2019. 1. 10.(목) ~ 2019. 1. 25.(금)**

나. 공고방법 : 파주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 게시

다. 제출서류

1) 필수항목 : 응시원서 1부, 자기소개서 1부,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(첨부양식), 주민등록등본 (5년간 주소변동사항 포함) 1부.
2) 선택항목 : 경력증명서 원본 1부(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응시원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),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. (해당자에 한함)

라. 접수기간 : **2019. 1. 22.(화) ~ 1. 25.(금)**
09:00~18:00 (마감시간내 도착분)
※ 주말 및 점심시간 (12:00~13:00) 접수 제외

마. 원서접수

- 방문접수 : 파주시청 징수과 지방세 콜센터 (신관 1층)

※ 방문시 대리접수 불가

6. 유의사항

가.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나. 응시자가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(응시서류반환청구서 작성)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, (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및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
다.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.

라.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마. 최종합격자는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정규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등 별도혜택 없습니다.

바.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
사.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 될 시 근로계약기간 중에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.

1)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자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
2) 예산부족 등으로 고용해지가 불가피 할 때
3)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해 도저히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4) 무단 결근·지각·조퇴를 비롯, 근무시간 미준수, 근무지 이탈,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음주, 오침, 연락 두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할 경우

아.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 1항에 따라 “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” 에 해당되므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, 2년을 초과할 경우에도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.

자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관련 문의 : 파주시 징수과 (☎031-940-4265~4266)

※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